

교원연봉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연봉제”란 개인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연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봉월액”이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③ “보수”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성과급, 직책수당을 말한다.

④ “보수월액”이란 교원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를 말한다.

⑤ “기본연봉”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 경력,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업적연봉”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서 개인별 승진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

⑥ “성과급”이란 대학발전에 대한 특별기여, 소속 학과(전공)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연봉조정시기 및 적용대상기간) 연봉조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봉적용 대상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수체계와 포괄연봉제) ① 대학의 보수체계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성과급, 직책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의 기본연봉은 [별표1] 과 같다.

③ 보직교원에 대해서는 연봉이외에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다만, 교원이 연봉적용기간 중에 직책을 사직한 경우 사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연봉월액에서 직책수당 해당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5조(연봉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의2항에 명시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연봉지급) ① 교원의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사임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제7조(보수산정 기산일) ① 교원이 경직할 때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한다.

② 교원의 직위(급)는 연봉해당년도의 3월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적용 및 평가

제8조(총 연봉 책정원칙) ① 총 연봉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② 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학년도 예산을 참작하여 보수 총재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업적연봉은 업적연봉 재원총액 범위 내에서 전학년도 교원 개인의 승진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책정한다. 다만 법정시수 미충족 교원의 경우 미충족 시간의 비율에 따라 동 비율만큼 업적연봉을 감액한다.

제9조(성과급의 산출방법 및 재원) 성과급의 재원은 전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전공운영수지 수익율”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성과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평가절차 및 연봉책정) ① 교원의 연봉은 교원 개인의 승진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매 학년도 개시일(3월 1일) 이전에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의 승진업적평가는 전학년도의 승진업적 등을 근거로 평가 한다.

② 교원의 승진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총장이 실시한 평가결과에 의한다. 다만, 총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각 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의 승진업적평가 결과를 매년1월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규임용교원의 연봉은 자격조건, 경력 및 기타사항을 참조하여 최초의 임용계약시 총장이 책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연봉조정위원회) ① 연봉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법인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9.25>

②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연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조정한다.

제12조(평가등급 및 인원배분율) 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연봉액을 정함에 있어 평가등급 및 인원배분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4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특급
인원배분율	20%	30%	30%	20%	100%

② 업적연봉금액은 A는 업적연봉의 90%, B는 70%, C는 50%, D는 30%, 특급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연봉 책정안의 승인

제13조(연봉책정안의 승인) ① 총장은 교원의 연봉을 최종 확정된 후 교원 연봉안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교원 연봉책정표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사장은 총장이 제출한 교원 연봉안의 승인을 위하여 해당 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교원 연봉안을 승인함에 있어 개별 직원 총산출급여의 10%의 범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연봉결정통보) ① 총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이 결정되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교원에게 연봉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봉이 결정되어 통보되고 통보받은 교원이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봉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원과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

제4장 이의 신청

제15조(연봉 이의신청 및 재계약) ① 교원이 대학이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일에 해당 교원을 소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환을 받은 교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심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가 인용한 경우 총장은 인용결과에 따른 연봉안을 다시 책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연봉미타결시 연봉지급)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미 타결된 교원에게는 연봉만료일부 터 연봉조정기간까지 대학이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후 연봉조정 확정시에는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7조(연봉지급 제한) 교원의 휴직, 징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의 정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연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 급여담당자 등은 자신 또는 다른 교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1. 9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연봉제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임교원기본연봉표]

전임교원 기본 연봉표

(단위 : 천원)

업 적 연 봉	금 액	A	B	C	D	특 급
	15,000	90% 13,500	70% 10,500	50% 7,500	30% 4,500	100% 15,000

기 본 연 봉		금 액	A	B	C	D	비 고
교 수	10년 이상	52,000	65,500	62,500	59,500	56,500	
	9년	51,000	64,500	61,500	58,500	55,500	
	8년	50,000	63,500	60,500	57,500	54,500	
	7년	49,000	62,500	59,500	56,500	53,500	
	6년	48,000	61,500	58,500	55,500	52,500	
	5년	47,000	60,500	57,500	54,500	51,500	
	4년	46,000	59,500	56,500	53,500	50,500	
	3년	45,000	58,500	55,500	52,500	49,500	
	2년	44,000	57,500	54,500	51,500	48,500	
1년	43,000	56,500	53,500	50,500	47,500		
부 교 수	6년 이상	41,000	54,500	51,500	48,500	45,500	
	5년	40,000	53,500	50,500	47,500	44,500	
	4년	39,000	52,500	49,500	46,500	43,500	
	3년	38,000	51,500	48,500	45,500	42,500	
	2년	37,000	50,500	47,500	44,500	41,500	
	1년	36,000	49,500	46,500	43,500	40,500	
조 교 수	4년 이상	34,000	47,500	44,500	41,500	38,500	
	3년	33,000	46,500	43,500	40,500	37,500	
	2년	32,000	45,500	42,500	39,500	36,500	100%적용
	1년	31,000	37,750	36,250	34,750	33,250	50%적용
전 임 교 수	2년 이상	30,000					
	1년	29,000					

기 타 사 항	1. 2013년 급여는 현행 급여 Table 적용
	2. 변경 급여 Table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3. 성과급 적용 비율은 2014년 30%, 2015년 60%, 2016년 100% 적용

[별표 2 교원연봉책정표]

교원연봉책정표

(단위 : 천원)

성명	직급(위)	재직 년수	평가 등급	연봉 총액				보수 월액		
				기본 연봉	업무적 연봉	성과급	총액	월 연봉액	직책 수당	지급월액
합 계										